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2. 3

行政委員會專門委員 金基永

で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 検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로 2015년 11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천원)

| 안건 번호 | 사업명 | 사 업 내 용 | 출연금액 |
|----------|--------------|-------------------------|-----------|
| 계 | | | 3,629,309 |
| 101 | 영등포구장학재단 출연금 | 인재육성 장학사업 | 324,000 |
| 102 |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 공연예술 진흥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 3,288,600 |
| 103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지방세제개편 등 연구 | 16,709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1)의 개정(2016 회계연도 시행)에 따라 2016년도 영등포구 출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 O 영등포장학재단 출연 등 3개 사업 (총 36억여 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 참고로, "법" 개정취지는 출연금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 하려는데 있고,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 따라서, 출연금액은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

¹⁾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